실명제 사업내역서

사업실명제 등록번호	2020-01	담당부서 작성자	사건총괄팀 (이용섭/02-6210-0051/ www@k-medi.or.kr)
정 책 명	의료분쟁 조정·중재 사업		
사업개요 및 추진경과	○ 추진배경: 의료사고 발생 시 소송 절차 외 신속하고 간편한 분쟁해결절차에 의한 해결 요구 증가 ○ 추진기간: 2012. 4. ~ 계속 ○ 총사업비: 301,720천원('20년 기준) ○ 주요내용 - 의료중재원에 접수되는 의료사고 분쟁의 조정·중재 ○ 추진경과 - 2012. 04.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- 2012. 06. 조정·중재 사건의 사건명 부여에 관한 세칙 제정 - 2012. 06. 조정·중재 신청 사건의 배당에 관한 운영 세칙 제정 - 2012. 06. 신속절차에 따른 사건처리에 관한 세칙 제정 - 2013. 08. 중재절차에 관한 운영세칙 제정 - 2016. 11.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, 동법 시행령, 동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- 2016. 11. 간이조정에 의한 사건처리에 관한 세칙 제정 - 2018. 06. 재감정 등 요구에 관한 지침 제정 - 2019. 06.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, 동법 시행령, 동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- 2019. 12.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		

<table>
<tr><td>사업수행자
(관련자 및
업무분담 내용)</td><td>○ 사업 관련자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성명</th><th>직급</th><th>수행기간</th><th>담당업무
(업무분담 내용)</th></tr>
<tr><td>선임
조정
위원</td><td>김상호</td><td>상임
조정위원</td><td>’20.1.1.~현재</td><td>조정중재 업무
총괄책임</td></tr>
<tr><td>조정
감정
본부장</td><td>이창섭</td><td>1급</td><td>’19.9.1.~현재</td><td>조정감정본부 운영</td></tr>
<tr><td>사건총
괄팀장</td><td>이용섭</td><td>일반직
3급</td><td>’19.9.1.~현재</td><td>조정・중재 사업
기획 총괄</td></tr>
<tr><td>조정감
정1팀장</td><td rowspan="2">이락원</td><td rowspan="2">심사관 가급</td><td>’19.9.1.~현재</td><td>내과, 약제과 등
조정・중재 수행</td></tr>
<tr><td>조정감
정2팀장</td><td>’19.12.2.~현재</td><td>정형외과, 산부인과 등
조정・중재 수행</td></tr>
<tr><td>조정감
정3팀장</td><td>홍은정</td><td>조사관 가급</td><td>’19.9.1.~현재</td><td>신경외과, 치과 등
조정・중재 수행</td></tr>
<tr><td>조정감
정4팀장</td><td>이영애</td><td>조사관 나급</td><td>’19.9.1.~현재</td><td>외과, 응급의학과 등
조정・중재 수행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tr><td>다른 기관 또는
민간인 관련자</td><td>○ 한국소비자원, 의료사고 당사자(환자 및 보건의료기관)</td></tr>
<tr><td>추진실적</td><td>○ 의료중재원 조정・중재 관련 현황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2019년</th><th>2018</th><th>2017</th></tr>
<tr><td>조정중재 처리건수</td><td>1,636건</td><td>1,589건</td><td>1,162건</td></tr>
<tr><td>간이(신속)절차
처리건수</td><td>96건</td><td>112건</td><td>81건</td></tr>
</table>
○ 의료중재원 조정・중재 성공률 현황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2019년</th><th>2018</th><th>2017</th></tr>
<tr><td>조정・중재 성공률
(종결일기준)</td><td>63.4%</td><td>59.4%</td><td>60.9%</td></tr>
</table>
○ 상임・비상임 조정위원: 총 206명(’20.1.기준)
* 조정위원 정원 100~300명 이내(법 제20조제1항)</td></tr>
</table>